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정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24

발의연월일: 2020. 7. 30.

발 의 자 : 홍정민 · 서동용 · 조정식

송기헌 · 오영훈 · 조승래

양이원영 · 신현영 · 김홍걸

도종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, 애플 앱스토어 등앱 마켓 관련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고 있음. 그러나 정부는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.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「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가이드라인」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.

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,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,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(안 제22조의9 및 제104조).

법률 제 호

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) ① 앱 마켓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 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· 판매하는 행위
  - 2.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·제작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"모바일콘텐츠 개발자"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  - 3. 제2항에 따른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간의 공정한 경 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
  - ②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·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(이하 "앱 마켓"이라 한다)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 및 결제와 관련된

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 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제104조제3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4. 제2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<신 설> 등) ① 앱 마켓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 <u>텐츠 등을</u> 등록 · 판매하는 행 위 2.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 2항에 따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개발・제작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"모바일콘 텐츠 개발자"라 한다)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 약을 체결하는 행위 3. 제2항에 따른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간의 공 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저해하는 행위

- ②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 텐츠 등을 등록・판매하고 이 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 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 는 공간(이하 "앱 마켓"이라 한 다)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 래 및 결제와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 텐츠 등의 결제와 관련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 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 다.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앱 마켓사업자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제104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-----

제104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1의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2. · 3. (생략)

④ ~ ⑥ (생 략)

\_\_\_\_\_

-----.

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

1의4. 제22조의9제1항 각 호의

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